

2013. 4. 22 Vol. 16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 마련
2013년 추경예산 및 기금 총지출 추가 확대

거시경제 동향

2013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

기획정보

최근 협동조합 설립 동향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 분석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 마련

※ 본 자료는 2013년 4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식품부,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 어미가축 감축 등 철저한 농가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목적) 최근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 어미가축 감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 마련**
 - ※ 큰수소가격: ('11.12) 474만 원/600kg → ('12.9) 557 → ('13.1) 514 → ('13.3) 465
 - ※ 돼지가격: ('12.8) 35만 원/110kg → ('12.10) 26 → ('12.12) 28 → ('13.3) 24
 - ※ 사료가격: ('08) 450원/kg → ('10) 468 → ('11) 512 → ('12) 539 → ('13.2월) 538
- (필요성) 최근 축산물 가격하락의 주원인이 **사육마릿수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인 만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농업인의 어미가축 감축 등 공급축소를 위한 자구노력 필요**
- (대책) 사료비 상승과 가격하락이 맞물린 점 등을 고려, 단기적인 경영부담 완화 및 수요확대와 유통구조 개선, 곡물사료 급여량 절감 및 조사료 자급 확대 등 중장기대책 추진

□ 주요 내용

- **4월 중** 어미가축 감축 및 적정사육두수 설정·관리 등을 위한 **축종별 수급조절위원회**(생산자, 소비자, 학계 등 10명 내외) **구성·운영**
 - 적정두수 설정 및 관리, 농가 자구노력 및 정부 정책수단 협의, 수급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가격안정대와 위기단계 설정, 각 단계별 정부·생산자가 조치할 역할 매뉴얼화
 - **암소 20만 마리**(3월까지 16.3만 마리), **모돈 10만 마리 감축**(4~8월) 등 중점 점검
- **6월 초까지 정육점 등에서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개정**(식약처)

- 제도개선 후 생산자단체, 정육점 등에 440억 원 시설·운영자금 지원, 전문인력 육성 등 **육가공활성화 대책 추진**
 - ※ 저지방부위 상시재고물량(연간 15,600톤)이 전량 가공품으로 활용 시 삼겹살 가격 연평균 약 3% 하락 가능
- 어미가축 감축 등 농가 자구노력을 전제로 **특별사료구매자금 1.3조 원** 신규 지원,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1,700억 원)은 추경으로 검토 중인 **300억 원 추가 예정(총1.5조 원)**
 - 농업인 부담금리 1.5%로 하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농협중앙회도 1% 부담
 - ※ 기준금리 4.7% 가정 시 농업인 1.5%, 농협중앙회 1%, 정부 2.2% 각각 부담
 - 다만, 자금 지원이 공급과잉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농가 자구노력과 연계
- **수입의존도가 높은 곡물사료 급여량 절감 및 조사료 자급 확대**를 위해 **4월까지 조사료증산대책** 마련
 - 겨울철 유희논 등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 확대
 - ※ '12년: 27만ha → '14년: 37만ha로 **조사료 및 TMR사료 공급 확대**, 산림 부산물 사료화, **산지축산 육성**
- 농협중심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및 농협계통 정육점(가맹점) 및 정육 식당(가맹점·축협직영점) 확대 등 **유통구조개선 지속 추진**
 - ※ 안심축산 시장점유율: ('12) 소10.9%/돼지4.7 → ('13) 18.6/8.6 → ('16) 37.1/25.0
 - ※ 정육점/정육식당: ('12) 300개소/301개소 → ('13) 500/364 → ('16) 900/600
 - **유통단계**를 현행 5~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유통비용 절감, 산지-소비지간 가격 연동성 제고**

주요 농정 이슈_2

2013년 추경예산 및 기금 총지출 추가 확대

※ 본 자료는 2013년 4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식품부, 추경예산 및 기금 총지출 3,983억 원 추가 확대」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농업·농촌분야에 추가 투자하는 **재정규모는 3,983억 원**(추경안 973억 원 + 기금 3,010억 원)
 - ※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예산안은 농특·광특회계 등 지출액 973억 원, 기금 지출확대는 정부 내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추진(국회 미제출)
- **전체 세출추경안(5.3조원) 규모의 1.84%, 전체 재정 투자확대 규모(기금 등 포함, 7.3조원)의 5.46%** 수준
-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1.3조 원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 긴급 추가 지원**
 -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축발기금) 포함 시 1.5조 원(농가 1.5%, 농협 1%)
- 이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 지출확대는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 반영**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민생안정 분야 및 농촌경제 활성화와 Golden seed 프로젝트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 중심**으로 편성

□ 주요 특징

- **농산물 수급불안 해소 및 물가안정**을 통해 농업인 소득 향상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2,453억 원 추가 확대**
 -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확대)** 산지유통시설(APC) 신규 5개소 추가 (100억 원), 배추 출하조절시설 확대(2개소 → 4, 100억 원) 등
 - **(유통구조 축소를 위한 직거래 거래중심의 유통구조 확대, 410억 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33개소(친환경 20개소 포함) 및 로컬푸드 직매장 60개소 확충, 소비지 직매장 20개소 확대, 직거래 매취자금 확대 등
 -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 농산물 계약재배 물량 확대(500억 원), 농산물 비축지원(400억 원) 등
 - ※ 도매시장, 사이버거래소 등 물량 결재자금(800억 원), 농산물공동출하확대 지원(파렛트 등 임차료, 143억 원) 등

- **농업인, 영세 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위해 **850억 원** 추가 지원
 -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확대
 - ※ 1,700 → 2,000억 원, 농가 1.5%, 농협 1%, 3,400농가 → 4,000
 - **(영세 농식품업체 지원)**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200억 원), 소상공업체 전용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 조기 구축(50억 원),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료 구매자금 지원 확대(300억 원) 등
- **재해예방**을 위해 **농업 생산기반 사업**에 **600억 원** 추가 투입, 이를 통해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 우기 전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관련 시설(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 확대
 - ※ 배수개선(300억 원): 계속지구 준공(14지구 → 17) 및 부분준공(37지구)
 - 노후·파손된 수리시설 조기 보수·보강하여, 가뭄 및 홍수 등 재해대응력 제고
 - ※ 수리시설 개보수(300억 원): 개보수 시급 지구 중심으로 준공 확대(120지구 → 150) 등
-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전략형 수출용 종자를 개발하는 **Golden seed 프로젝트(농식품부 소관)**에 **80억 원** 추가 투자
 - ※ 농진청: 35억 원 → 75, 해수부: 29억 원 → 59

□ 양우 계획

-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4월 국회에 상정, 국회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되는대로 **조기 집행**하여 **추경의 효과 극대화**
 - **기금사업**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신속히 기금운용계획 변경 추진**
⇒ **추경예산의 정책효과 배가**
- **정부 추경안대로 확정될 경우, '13년 농식품부 총지출규모 13조 9,251억 원**
 - ※ 당초 13조 5,268억 원보다 3,983억 원 ↑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원 배분(안)>

단위: 조 원

구 분	'12년	'13본예산(A)	'13추경(안)(B)	증감(B-A)
• 총지출	325.4	342.0	349.0	7.0
농림·수산·식품	18.1	18.4	18.8	0.5

거시경제 동향

2013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

※ 본 자료는 2013년 4월 17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전반적 동향

○ [13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4% 하락

※ 전년 동월대비 2.4%↓

- (농림수산물) 축산물은 올랐으나 채소류, 수산물 등이 내려 전월대비 3.8% 하락

※ 전년 동월대비 10.1%↓

- (공산품) 국제유가 하락 및 철강시황 악화로 석유제품, 제1차금속제품 가격이 내려 전월대비 0.6% 하락

※ 전년 동월대비 4.1%↓

- (서비스) 음식점및숙박, 사업서비스 등이 올라 전월대비 0.2% 상승

※ 전년 동월대비 0.2%↑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12월	1월	2월	3월p	12월	1월	2월	3월p
총 지 수	1000	-0.3	0.2	0.7	-0.4	-1.2	-1.6	-1.6	-2.4
농 립 수 산 품	33.8	2.7	2.3	1.9	-3.8	-3.8	-1.7	-5.2	-10.1
곡 물	7.2	0.5	0.3	0.5	-0.5	5.7	5.7	5.1	3.9
채 소	6.6	10.7	11.1	1.6	-11.0	28.0	24.1	20.7	1.7
과 실	2.6	5.4	2.6	10.0	-1.8	0.3	-7.9	-23.1	-37.9
축 산 물	8.5	-2.1	-1.9	-0.5	2.1	-20.3	-13.0	-14.0	-14.3
수 산 식 품	5.5	1.9	0.0	-0.2	-2.7	-2.4	-2.5	-2.9	-6.2
공 산 품	611.4	-0.6	0.2	0.8	-0.6	-2.7	-3.1	-3.0	-4.1
석 탄 및 석 유 제 품	57.8	-1.2	0.1	4.4	-3.1	-2.6	-5.1	-3.7	-9.2
화 학 제 품	107.5	-0.2	0.5	1.1	-0.4	1.3	0.0	-1.0	-2.4
1 차 금 속 제 품	115.1	-1.2	0.4	0.8	-1.8	-11.8	-11.0	-10.6	-12.3
전 기 및 전 자 기 기	89.1	-0.4	-0.5	0.5	0.4	-2.9	-3.5	-2.8	-2.4
전 력 · 수 도 · 가 스	54.3	0.0	1.2	1.6	1.4	2.8	3.9	5.3	6.3
서 비 스	298.1	-0.1	-0.3	0.1	0.2	1.2	0.5	0.4	0.2
음 식 점 및 숙 박	41.0	0.4	0.5	0.2	-0.2	1.7	1.6	2.0	1.8
운 수	50.6	-0.5	-0.1	-0.2	0.6	0.8	0.7	0.9	0.5
금 융 및 보 험	30.9	0.6	-4.6	0.0	0.2	-0.3	-6.0	-6.8	-6.6
기 타 서 비 스	40.4	-0.1	0.1	0.1	0.0	1.9	0.6	0.5	0.3

주: 잠·확정체제 도입으로 1월 지수는 잠정치이며, 2월 지수 공표 시 확정됨.

□ 특수분류별

○ [식료품] 전월대비 1.5% 하락

※ 전년 동월대비 3.4% ↓

○ [신선식품] 전월대비 6.8% 하락

※ 전년 동월대비 10.8% ↓

○ [에너지] 전월대비 0.7% 하락

※ 전년 동월대비 0.3% ↓

○ [IT] 전월대비 0.3 상승

※ 전년 동월대비 2.2% ↓

○ [신선식품및에너지 이외] 전월대비 0.3% 하락

※ 전년 동월대비 2.5% ↓

<특수분류 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12월	1월	2월	3월p	12월	1월	2월	3월p
식 료 품	64.8	1.3	1.2	0.7	-1.5	0.3	1.4	0.2	-3.4
식 료 품 이 외	935.2	-0.4	0.1	0.7	-0.3	-1.3	-1.8	-1.7	-2.4
신 선 식 품	14.5	6.8	5.7	3.1	-6.8	9.6	7.6	3.0	-10.8
신선식품이외	985.5	-0.4	0.1	0.7	-0.3	-1.4	-1.7	-1.6	-2.3
에 너 지	92.4	-0.7	0.9	3.1	-0.7	-0.2	-0.4	1.7	-0.3
에 너 지 이 외	907.6	-0.2	0.1	0.4	-0.4	-1.3	-1.7	-1.9	-2.7
I T	109.2	-0.7	-0.4	0.4	0.3	-2.6	-3.0	-2.5	-2.2
I T 이 외	890.8	-0.2	0.2	0.7	-0.5	-1.1	-1.4	-1.5	-2.5
신 선 식 품 및 에 너 지 이 외	893.1	-0.3	0.0	0.4	-0.3	-1.5	-1.9	-2.0	-2.5

주: 당월 지수는 잠정치(preliminary)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확정됨.

기획 정보

최근 협동조합 설립 동향

※ 본 자료는 다양한 참고문헌을 활용하여 동향분석실에서 작성한 것임.

□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11.12.29) 및 공포('12.1.26)됨에 따라 '12.12.1일부터 시행 및 발효
 -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인가) 및 설립 등기를 거쳐 설립 가능
 -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적 활동을 위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설립 가능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 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설 립 사 업	• 법인 • 시도지사 신고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비영리법인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배 당 청 산	• 잉여금의 10/100 이상 • 배당 가능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잉여금의 30/100 이상 • 배당 금지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자료: 기획재정부_보도자료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및 후속과제」 (2012.2.28)

○ 협동조합의 주요내용으로

- i)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의 신설
- ii) 협동조합 정책심의회 등 정책 추진체계
- iii)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등 특례규정
- iv)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매 3년 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등

- v)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등

○ 협동조합은 세계적으로 생산자·소비자·근로자·신용·보험·주택·스포츠 등 다양한 사업과 업무영역에서 활성화 되어 있음.

- 앞으로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 설립 가능하며, 조합원 교육·지역사회 기여 등의 의무가 존재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 유형>

구 분	분 야	내 용
복지·육아 등 사회서비스	복 지	•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사회서비스 분야
	육 아	•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육 아	• 대안학교, 홀스쿨링, 대학교, 중고생, 학부모 등
직원 협동조합 (조합원=직원)	근로자	•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교육관련	•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취약계층	•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기사 등
	특수고용	• 캐디, 학습지교사 등
	소상공인	•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경제·사회 영역 등	창 업	•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벤처 등
	국 회	• 국회의원(정책연구·사회봉사), 의원보좌관 등
	문 화	• 문화, 예술, 체육, 시골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기 타	•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FC 경남) 등

자료: 협동조합기본법_ <http://www.co.go.kr/>

□ 최근 협동조합 설립 현황

○ 협동조합기본법('12.12.1) 시행된 이후 3.10일까지 전체 설립신청 건수는 총 647건으로 하루 평균 6.5건 가량 설립 신청한 가운데 481건이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상태

- 기본법 시행 첫 달인 신청건수는 ('12.12월) 136건 → ('13.1월) 224건 → ('13.2월) 248건으로 매달 가파른 증가세

※ 보건사회연구원, 향후 5년 간 최소 8,000~1만 개의 협동조합 설립 예상, 이를 통해 취업자 수는 4~5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협동조합 설립 현황>

구 분	신청건수 ('12.12.31일 기준)	신청/처리건수 ('13.1.31일 기준)	신청/처리건수 ('13.2.28일 기준)	신청/처리건수 ('13.3.10일 기준)
일반협동조합	119	331/222	570/437	605/474
사회적협동조합	17	29/4	37/7	40/7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	1/-	2/-
총 계	136	360/226	608/444	647/481

자료: 기획재정부_보도자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0일 - 새로운 협동조합 시대 활짝 열린다」 (2013.3.10)

-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605건 설립신청** 중 **474건이 신고수리**, 지역별로는 **서울이 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95건) > 경기(68건) > 부산(50건) 등의 순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수리 현황>

단위: 건, '13.3.10일 기준

소관 지자체	신고건수누계	수리건수누계	소관 지자체	신고건수누계	수리건수누계
서울특별시	174	116	충청북도	8	5
부산광역시	50	47	충청남도	19	17
대구광역시	16	15	전라북도	33	32
인천광역시	17	12	전라남도	28	27
광주광역시	95	85	경상북도	25	15
대전광역시	21	19	경상남도	13	13
울산광역시	11	9	세종특별자치시	4	1
경 기 도	68	48	제주특별자치도	2	1
강 원 도	21	12	총 계	605	474

자료: 기획재정부_보도자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0일 - 새로운 협동조합 시대 활짝 열린다」 (2013.3.10)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교육·농림·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7개 설립 인가** 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 기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현황>

연번	협 동 조 합 명	주 요 사 업	소 관 부 처
1	행복도시락	• 공공급식, 공동 식자재구입 및 메뉴개발 등 사업	기 획 재 정 부
2	글로벌시민양성	• 시장경제 이해증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 획 재 정 부
3	버팀목 공동체	• 저소득층 교육, 성폭력 예방 사업	교육과학기술부
4	도시원예	• 도시원예 관련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5	수정동희망마을수직농장	• 도시형 수직농장 운영 사업	농림수산식품부
6	파주녹색농업	• 로컬푸드 개발·연구·보급, 위탁판매 사업	농림수산식품부
7	카페오아시아	• 카페 창업을 통한 소외계층 고용	고 용 노 동 부

자료: 기획재정부_보도자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0일 - 새로운 협동조합 시대 활짝 열린다」 (2013.3.10)

-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전국자전거 협동조합연합회' 등 2건 신청, 협동조합 설립이 늘어남에 따라 연합회 설립도 더욱 증가 전망
 - ※ 일반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협동조합들이 모여 만든 연합회(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12.12.1)이 발효되면서 **지자체마다 협동조합 설립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경제민주화 바람과 더불어 자본주의의 대안이고 심지어 일반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발생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기대효과

- (새로운 법인격) 기존의 법제(상법과 민법)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사회적 수요 반영**
 - 협동조합을 '법인'으로 하여 법인격 부재로 인한 문제점* 해소(현재 개인사업·주식회사(상법)·사단법인(민법) 형태로 사업)
 - ※ (개인사업) 무한책임, 대표교체가 어려워 민주적 운영 어려움
 - (주식회사) 출자 비례 의결권(1주 1표)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 등
- (설립분야 확대)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가능
 - 분야에 관계없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소규모 창업 용이**하여 경제 활력 제고 가능
 -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기존 경제주체(주식회사 등)와의 경쟁도 촉진**
 - ※ 한살림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유기농 재배 농산물은 산지 직거래를 통해 일반 매장 대비 30% 정도 저렴
- (복지시스템 보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하는 복지'에 기여
 - 청년창업, 소액창업 등 신규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제고와 돌봄노동, 대안학교 등 공공서비스 보완 가능
 - 4대 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케디, 학습지교사 등) 등의 사회안전망(safety net)내 편입 및 취약계층 자생력 강화에 기여

※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_www.mosf.go.kr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_www.cooperatives.or.kr
- 공감코리아_「협동조합설립 붐...법 시행 100일만에 647건 신청」(2013.3.11)
- 기획재정부_보도자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0일 - 새로운 협동조합 시대 활짝 열린다」(2013.3.10)
- 기획재정부_보도자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2012.5.7)
- 기획재정부_보도자료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및 후속과제」(2012.2.8)
- 기획재정부_보도자료 「협동조합기본법 공포, 2012.12월 시행」(2012.1.25)
- 기획재정부_보도자료 「아제는 협동조합 시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방향」(2012.11.28)
- 기획재정부_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서_「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2013.1.24)
- 강원도민일보_보도자료 「의욕 앞선 협동조합 잇단 시행착오」(2013.3.13)
- 충청투데이_보도자료 「협동조합시대,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2013.3.13)
- 매일경제_보도자료 「협동조합 ‘붐’ 하루 6개씩 설립」(2013.3.11)
- 아시아경제_보도자료 「협동조합 활성화...물가 안정제 될까」(2013.3.11)
- 일간투데이_보도자료 「활발한 협동조합 설립과 일자리 창출」(2013.3.11)
- 중부일보_보도자료 「지자체마다 협동조합 열풍이 부는 이유」(2013.2.26)

참고자료 1. 해외 협동조합 현황

<해외 협동조합 사례>

구 분	내 용
미그로 (스위스)	⇒ - 커피, 설탕, 비누 등 생필품의 유통마진을 줄여 경쟁자보다 40%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소비자협동조합 - 직원 8만3천 명, 총매출액 약32조 원, 시장점유율 20%(10년)
몬드라곤 협동조합 (스페인, 바스크 지방)	⇒ - 스페인 내 3대 기업그룹으로 공업협동조합 87개소, 신용·교육·연구개발 등 120개 협동조합의 복합체 - 고용인원 10만 명, 매출액 24조 원, 매출액 중 수출비율 58%로 스페인 경제의 견인차
FC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 - 축구 클럽으로 선수들이 행정 및 관리 업무도 직접 수행 - 클럽회원(13만 명)·팬클럽(1,600개 이상) 보유, 최근 문화적·자선적 단체도 설립
썬키스트 (미국 캘리포니아·아리조나)	- 오렌지농민(6천여 명)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판매 협동조합 연합회 - 출하량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차등화 하는 비례투표제 채택
주택협동조합 (덴마크)	⇒ 조합원 출자금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주택을 지은 뒤 공동소유로 관리·운영

자료: 기획재정부_보도자료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및 후속과제」(2012.2.8)

<국가별 협동조합법 체계>

법체계 유형	해당 국가
기본법 (단일 협동조합법)	•독일,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캐나다, 포르투갈, 브라질, 코트디부아르, 헝가리, 인도, 요르단, 케냐, 멕시코, 태국 등
기본법·개별법	•프랑스, 러시아, 대만, 한국
개별법만 존재	•일본, 루마니아, 우루과이
민법, 상법 등 성문법에 관련규정 반영	•영국, 스위스, 멕시코, 벨기에, 이탈리아, 체코, 기니, 뉴질랜드
기타 (관련 법률 없음)	•중국,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에서만 주법으로 협동조합 관련 법 조항 규정)

자료: 기획재정부_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서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2013.1.24)

참고자료 2. 협동조합기본법 구성 체계(총7장119조)

< 제1장 총 칙 >	
(법인격)	• 협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제4조)
(정 책)	• 재정부가 협동조합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 수립(제11조) • 3년 주기의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국회 보고(제11조)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날 제정(제12조)
(타법과의 관계)	• 타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는 동법 적용 배제 • 제한적 공정거래법 적용배제(제13조)
< 제2장 협 동 조 합 >	
(의결·선거권)	•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짐 ⇒ 1인 1표(제23조)
(설 립 등 록)	• 5인 이상, 협동조합 설립 시 시·도지사에게 신고(제15조)
(적 립 금)	•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 적립 등(제50조)
(해 산)	•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제59조)
<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	
(설 립 등 록)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기재부장관)(제71조)
(의결·선거권)	• 협동조합연합회의 의결권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을 기준으로 함(제75조)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	
(설 립 인 가)	•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재부장관 인가로 설립(제85조) • 설립절차, 사업, 소액대출 등을 협동조합과 구분(제86-88조, 제93-95조)
(적 립 금)	•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 적립 등(제97조)
(소 액 대 출)	• 사회적협동조합은 총 출자금 범위 내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가능(제94조)
(해 산)	•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국고 등에 귀속(제104조)
<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설 립 인 가)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은 인가(기재부장관)(제114조)
< 제6장 보칙 > < 제7장 벌칙 >	
(벌 칙)	•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제117~119조)

자료: 기획재정부_보도자료 「협동조합기본법 공포, 2012.12월 시행」(2012.1.25)

참고자료 3. 각 지자체별 주요 협동조합 설립 현황

단위: 명, 천 원

지역	명 칭	설립 동의자	출자금액	사 업 내 용
① 지역밀착형 협동조합				
서울	씨앗들 협동조합	16	7,400	• 지역주민과 청년들이 '레알 텃밭학교' 운영, 도시농업 및 생태 교육, 공동체 텃밭 운영사업 등 추진
	한지랑칠보랑 협동조합	13	1,300	• 중랑구 면목2동 지역주민들이 전통 한지·칠보 공방을 운영·생산 판매,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부산	한국문화예술 협동조합	6	600	•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만들고 지역 사회에 문화 봉사를 수행
대구	한국방과후학교 협동조합	6	20,000	• 방과후학교, 창의체험캠프, 저소득층 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 교육활성화
전남	농어촌 섬마을 유학협동조합	12	1,200	• 섬마을 폐교위기학교로 도시학생들의 유학을 유도 하여 폐교를 막고 전인교육 실시
광주	동이랑 생활문화공동체 협동조합	5	5,000	• 양동 휴먼시아 입주자들이 모여 생활, 문화교류 등을 위한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제주	월평도시골 협동조합	8	3,200	• 도시에서 서귀포시 월평마을로 이주한 젊은 청년들과 마을주민들이 힘을 합쳐 농가 소득증대·일자리 창출
② 사업자형 협동조합				
서울	서울자전거 협동조합	18	122,000	• 자전거 부품 및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전거공동구매 및 공동판매 등을 위해 설립
	전국편의점 사업자협동조합	23	23,000	•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불합리한 가맹수수료, 위약금 등 개선·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립
경기	농생명융합 협동조합	9	86,000	• 수직농장에 설립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업자들이 공동특허 개발 등 위해 설립
강원	정선아리랑 시장협동조합	115	50,000	• 정선아리랑시장 상인들이 모여 지역특산물 공동판매
전북	완주한우 협동조합	60	500,000	• 한우 계약 사육, 공동브랜드 개발 및 직매장 운영으로 완주지역 한우사육 활성화
부산	골목가게 협동조합	160	202,200	•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160개여 점포가 주축
③ 권익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동조합				
서울	지구촌 협동조합	94	46,680	• 이주근로자 대상 급식소와 인력중개소를 운영하여 이주근로자들의 권익보호
	한국고령근로자 협동조합	11	100,000	• 공공기관 및 주택 등 청소원, 학교경비원 등 권익향상
인천	협동조합 전국통신소비자	31	10,000	• 알뜰폰 등을 활용하여 휴대폰 단말기 공동구매 등
광주	더불어 樂	15	15,000	• 노인복지관 회원들이 주도하여 6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설립
전북	다문화 협동조합	9	21,000	• 남원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국제전화에 필요한 전화카드 등을 공동구매
전남	문수두루 누리협동조합	30	2,500	• 여수 문수동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민 들이 모여 마을카페, 베이커리 운영

자료: 기획재정부_보도자료 「이제는 협동조합 시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방향」 (2012.11.28)
 기획재정부_보도자료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0일 - 새로운 협동조합 시대 활짝 열린다」 (2013.3.10)

※ 본 자료는 4월 15일~19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애플 사과기에...수입양파 ‘밀물’

- 현재 서울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양파의 절반 이상이 수입양파. 국산 햅양파 물량이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 수입양파가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산지와 도매시장에선 2월부터 양파 수입정책*을 편 정부 당국에 곱지 않은 시선. 수입양파는 정부가 3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5만t 추가한 것을 계기로, 구매권을 낙찰 받은 수입업자들이 중국·베트남·우크라이나·대만 등에서 수입. 수입양파가 넘쳐나지만 소비시장이 구별되기 때문에, 국산 양파값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 국산 양파가격이 최근 kg당 2,000~2,500원 사이를 오르내리며 유례없는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 당시 정부는 올해 TRQ 물량 2만1,000t이 이미 시중에 판매가 완료된 상태에서, 4월까지 2만t 등 올해 TRQ 물량 5만t을 추가로 들여와 시장에 방출할 계획

자료 : 농민신문(2013.4.17)

□ 돼지고기 안정 노력 엿바퀴?...사육마릿수 1,000만 마리 넘어

- 통계청, 4.12일, 1·4분기 가축동향조사 발표...3월1일 현재 돼지 사육마릿수 1,010만7,000마리(전분기대비 19만1,000마리↑)로 돼지 사육마릿수 1,000만 마리 돌파해 사상 최대치. 지난해 9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양돈 산업 불황으로 사육마릿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농업관측센터·관련업계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 예상*. 돼지 사육마릿수 감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돼 추진 중인 어미 돼지 감축 등 수급안정화 사업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돼지가격 회복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 제기. 이 같은 어미돼지 마릿수 증가에 따라 정부·한돈협회·농협 등이 펼치고 있는 모든 감축 목표 마릿수 조정 등 불가피할 듯

※ 업계 “**통계청 조사 결과 믿기 어렵다**”...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산지와 관련 연구기관에서 사육마릿수가 줄고 있다는 의견을 많이 내놓아 지난해 12월을 최대 마릿수로 추정, 수급관련 대책 추진 ⇒ **통계는 정책수립 등 핵심자료인 만큼 조사체계 점검해 신뢰 높여야...**

자료 : 농민신문(2013.4.17)

□ 세계 곡물재고량 전월보다 증가

- 농식품부, 최근 발표한 **미 농무부 4월 수급보고서**...**사료용·자가소비 감소 영향**으로 **2012/13년 세계 곡물재고량 전월보다 2.8%(1,200만 톤) 증가** 예상. 품목별로는 ▲**밀**...생산량 거의 변동이 없으나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2/13년 전 세계 재고량 전월대비 2.3% 증가** 전망. ▲**대두**...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생산 증가와 전 세계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재고량 전월대비 4% 증가** 예상. ▲**옥수수**...미국의 에탄올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 감소로 **재고량 전월대비 6.6% 증가** 전망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4.15)

□ GMO 수입업체 공개 여부 공방

- 정부의 GMO* 수입업자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GMO가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만큼 **소비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명단 밝혀야**” ↔ **식약처**...“GMO는 안전성이 확인된 것만 정부에서 수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GMO 수입업자와 물량 등을 자세히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영업비밀보호 차원**에서 **위법 소지**”. **식약처가 GMO 수입업자 등의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하면서 **행정소송으로 번질 전망**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재조합생물체(유전자변형생물체)’라고 하며,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어떤 생물체의 특정형질을 가진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의 염색체에 넣어 특정한 목적에 맞도록 만든 생물체

자료 : 농민신문(2013.4.15)

□ 정부, 농산물 가격안정대 설정

- 농식품부, **5월 배추·양파, 하반기 무·마늘·고추 등 모두 5개 품목**에

대해 **가격안정대*** 본격 설정...상하한선 벗어나면 대응해 '참여와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관리. 이를 위해 이달 중에 생산자와 소비자·정부·유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품목은 정해졌지만, **가격안정대 방식 아직 미지수**. 과거 5개년 또는 3개년 평균가격이나 중간 가격 등 다양한 방안 강구. ▲농식품부 관계자...“예를 들어 양파와 같이 소비량이 늘어나는 품목은 과거 3개년 가격, 김치 소비 감소의 영향을 받는 배추는 5개년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 등 고려”, 다만 **농산물 가격의 계절성** 때문에 안정대도 **월별로 달리 설정**한다는 방침. 안정대 설정 때 **작물별 생산비도 고려**될 전망. 이는 가격 하한선이 생산비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

※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상한선과 하한선, 시장 가격이 이 안정대 안에서 움직이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이 범위를 벗어날 때만 정책을 편다는 게 농식품부의 구상

자료 : 농민신문(2013.4.15)

□ 내년도 농업예산 '유통구조개선·수급안정' 초점

- 농식품부, 4.12일, 전국 시도·시군 농정과장 워크숍, **내년 예산...유통구조 개선과 수급안정, 농식품 산업의 창조경제, 농가 소득안정** 등에 맞춰 편성될 전망.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유통계열화, 직거래 비중 확대, 농산물 수급관리체계 강화, 소비지 유통 활성화 및 물류체계 개선 등에 집중, ▲**창조경제**...6차 산업화, 신성장동력확충, 정예인력 육성,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식품산업 육성 등의 사업 추진, ▲**농가 소득안정**...직불제 개편, 자연재해 대응, 가축질병 대응, 농업경영비 절감, FTA(자유무역협정) 대응 등, ▲**복지농촌예산**...농촌생활여건 개선,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농촌활력찾기 운동, 지역공동체 복원 등, ▲**안전·안정 농식품 공급부문**...국내 자급률 제고, 해외 안정적 곡물조달, 생산단계의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 ▲**내년도 신규사업**...6차 산업화,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 수요자 눈높이에서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사업 발굴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4.15)

□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과도한 흑자 ‘눈살’

- 가락시장·강서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 과도한 흑자에 대해 논란. 연도별 손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08년) 43억2,800만 원 → (‘09년) 70억5,500만 원 → (‘10년) 93억7,000만 원 등으로 **흑자 규모 매년 증가, 지난해 125억 원 흑자**. 주요 사업수입은 시장사용료, 임대료, 주차료, 시설사용료, 점용료, 학교급식 등. 이 중에서 도매시장법인 등 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시장사용료가 전체 수입의 절반가량 차지. 경쟁력이 약화된 도매시장과 유통주체들 대상으로 수입확대에만 골몰한 것** 아니냐는 지적. 실제 상장매매 등 농산물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 부과되는 **시장사용료가 최근 인상***.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거출하는 것 이지만 농산물 거래액으로 책정되는 만큼 결과적으로 출하자 부담으로 전가
※ (‘11년) 0.5% → (‘12년) 0.53% ↑ → (‘13년) 0.55% ↑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4.18)

□ 연장 규제개선, 창조경제 돕는다

- 농식품부, **농업·농촌 현장의 농축산식품분야 규제·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위해 전국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4월 말까지 **현장으로 사향 의견 수렴**...농식품분야 중소기업 애로 해소, 민생불편 해소 및 안전사회 구축, 창조경제 지원 및 투자여건 개선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 농업·농촌·식품 현장의 농업인을 포함한 일반국민의 규제 개혁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예정. 모든 국민은 전국 지자체, 농식품 관련 행정기관, 농식품부 홈페이지 ‘국민소통-규제개혁제안’ 코너를 통해 농 식품분야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 건의.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 개혁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전면적인 규제개혁 착수**. “농식품분야의 숨어있는 ‘손톱 밑 가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갈 것”

자료 : 원예산업신문(2013.4.17)

□ 국외, 농촌교육 활성화 법안 4건 발의...내용과 쟁점

○ 국회, 농촌교육 활성화 관련 법률 잇따라 발의

-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농 양극화 완화,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위함.
- 19대 국회, 4월 현재까지 농촌교육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 4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법안 발의 배경]

- 농어촌학교는 교육환경이 열악해 학생 수 감소 및 통합되거나 폐교 위기에 처한 곳도 상당수 ⇒ 악순환 지속
- 교원의 업무도 가중돼 상당수 교원들의 근무기피 요인

[법안 내용]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담 주변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담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시설의 확보, 교재·교구 정비, 교과서 무상공급, 적절한 교원 배치 등의 의무교육 진흥 조치
-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확일적 기준에 따른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 방지 목적, 농어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함으로써 학교 활성화
-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농어촌교육발전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시행, 시·도 교육감 매년 농어촌교육발전 시행계획 수립·시행, 농어촌 면지역에 초·중·고등학교 통합학교 1개 이상 운영, 농어촌학교 근무 교원에게 근무수당 및 현저거주 장려수당 지급
- '농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교육과학기술부에 농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 신설, 각 시·도교육청에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 설치, 농어촌학교 폐교 때 주민 2/3 이상의 서면동의 필수, 농어촌학교 완전 무상교육 등

[법안 발의 쟁점]

- 예산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
 -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유지·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투입이 뒷받침
 - ※ 18대 국회에서도 농어촌교육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됐으나,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폐기
- 농어촌 이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될 가능성

자료 : 농민신문(2013.4.15)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 본 자료는 2013년 4월 1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농가규모 및 분포

- **[농가 및 농가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업포기, 전업 등의 이유로 농가 및 농가인구는 전년대비 각각 1.0%(1만2천 가구), 1.7%(5만1천 명) 감소
 - 2012년 12월 농가는 15만1천 가구, 농가인구는 291만2천 명으로 집계
 - 농가인구 중 남자는 142만4천 명, 여자는 148만8천 명으로 성비는 95.7로 나타남.

<농가 및 농가인구(2008 ~ 2012)>

단위: 천가구, 천명, %, %p

비 고	2008	2009	2010	2011(A)	2012(B)	증감 (C=B-A)	증감률 (C/A×100)
농 가	1,212	1,195	1,177	1,163	1,151	-12	-1
농가비중(%)*	7.2	7	6.8	6.6	6.4	-0.2	-
농가인구	3,187	3,117	3,063	2,962	2,912	-51	-1.7
남 자	1,542	1,510	1,501	1,456	1,424	-32	-2.2
여 자	1,644	1,607	1,562	1,506	1,488	-18	-1.2
성 비	93.8	94	96.1	96.6	95.7	-1	-
농가인구비중(%)*	6.5	6.3	6.2	6	5.8	-0.1	-

* 총가구 및 총인구에 대한 농가 및 농가인구의 비중

- **[도·시군별 농가인구]** 농가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북, 시군구는 제주시로 나타남.
 - 농가가 많은 시도는 경북(19만6천 가구, 17.0%), 전남(16만4천 가구, 14.3%), 충남(14만7천 가구, 12.8%) 순
 - ※ 전년대비 감소율이 높은 시도는 충남(-2.2%), 경남(-2.0%), 전남(-1.7%) 순

□ 농가구조

1) 가구

- **[가구원수]**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평균 가구원수는 2.5명
 - 가구원수별 농가는 2인 가구(48.9%), 3인 가구(16.3%), 1인 가구(15.4%) 순
 - 농가당 평균 가구원수는 2.5명으로 전년에 비해 0.1명 감소

- [농가 경영주 연령] 70세 이상이 36.2%으로 다수, 평균연령은 64.4세
- [경영주의 농사경력] 평균농사경력 34.5년이며, 20년 이상인 경영주가 76.1%로 다수

2) 인구

- [농가인구 고령화율] 35.6%(전년대비 1.9%p ↑)로 전체 고령화율(11.8%)의 3배
 - 연령별 농가인구는 70세 이상이 25.3%를 차지하며, 60대(20.8%), 50대(19.7%) 순
 - ※ 70세이상 고령자는 전년대비 3만8천 명(5.4%) 증가
 -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35.6%로 전년(33.7%)에 비해 1.9%p 증가

□ 농업경영

- [전업농가비율] 전체농가의 54.3%로 전년 대비 0.8% 감소
 - 전·겸업별 농가는 전업이 62만5천 가구(54.3%), 겸업이 52만6천 가구(45.7%)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
- [경지규모] 규모화가 진행되어 경지가 3ha 이상인 농가가 증가
 - 경지규모 1.0ha 미만 농가는 75만 가구 (65.2%), 3.0ha 이상 농가는 9만9천 가구 (8.6%)로 나타남.
- [영농형태] 채소산나물 농가는 증가하고 논벼, 과수, 축산 농가는 감소
 - 영농형태별 농가는 논벼(42.9%), 채소산나물(23.6%), 과수(15.1%), 식량작물(7.8%) 순으로 나타남.
 - 영농형태별 시도 분포를 보면 논벼 농가는 충남(17.7%), 채소 산나물은 전남(17.7%), 과수는 경북(32.5%)에 가장 많음.
- [농축산물 판매금액] 1천만원 미만 농가가 64.9%로 다수이며, 1억원 이상인 농가는 전체의 2.6%(3만 가구)
- [농축산물 판매처] 농협·농업법인이 32.4%를 차지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